

학칙개정(안) 사전공고

본교 학칙 제68조에 의거하여 학칙개정(안)을 사전공고 하고
자하오니 교직원, 학생 등 관계자께서는 내용을 검토하시고
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 공고 및 의견 제출 기간 : 2026년 5월 12일 ~ 5월 22일까지

* 제출방법 : 의견서를 교학처 또는 이메일(kua@kua.ac.kr)로 제출

국제예술대학교 학칙 개정 사유 및 신구조조표

1. 개정 사유

예술 콘텐츠와 패션, 뷰티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예술 산업 상황을 고려하여,
문화예술 산업에 최적화된 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공연예술과의 모델 전공과 뷰
티아트 전공, 스튜디오작곡 전공의 입학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.

기존 학칙의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은 개정된 교육부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반영
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2. 주요 개정 내용

- ① 공연예술과의 입학정원을 33명 증원함.
- ② 현장실습학기제 조항에 개정된 교육부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규정을 반영함.
- ③ 이동수업 조항에서 관련 법 조항 수정함.
- ④ 성희롱 예방교육 조항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조항명 수정함.

3. 신구조문대비표

변 경 전	변 경 후	비 고
제5조(설치계열, 학과 및 입학정원) 본 대 학에 두는 계열, 학과 및 입학정원	제5조(설치계열, 학과 및 입학정원) 본 대학에 두는 계열, 학과 및 입학정	공 연 예 술 과 의

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8.06.14>
<개정 2022.06.22.> <개정 2024.07.10.>

구 분			입학 정원	계
계열/학과/전공			주간	
예 능 계 열	음 악 과	실용음악	168	354
		스튜디오작곡		
	공연예 술과	스튜디오작곡	186	
		연기예술		
		공연기획		
		무대예술		
		뷰티아트		

원은 다음과 같다.<개정 2018.06.14> <개정 2022.06.22.> <개정 2024.07.10.><개정2026.05.27.>

구 분			입학 정원	계
계열/학과/전공			주간	
예 능 계 열	음 악 과	실용음악	168	387
		스튜디오작곡		
	공연예 술과	스튜디오작곡	219	
		연기예술		
		공연기획		
		무대예술		
		뷰티아트		

입 학 정
원을 33
명 증원
함

제29조의 2(현장실습 교육과정) ① 현장 실습교과는 전공과정으로 운영하며 4주 이상의 단기현장실습(계절제)과 학기단위의 실습학기제(학기제)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하다. 단,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교과목으로 지정(야간과정 및 산업체위탁생 제외)할 수 있다.<개정 2015.11.07.>
② ~~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160시간 이상 실습시 3학점으로 인정하고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,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.<개정 2019.01.23>~~
③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29조의 2(현장실습 교육과정) ① 현장 실습교과는 전공과정으로 운영하며 4주 이상의 단기현장실습(계절제)과 학기단위의 실습학기제(학기제)로 구분하여 실시 가능하다. 단, 학과 특성을 고려하여 필수교과목으로 지정(~~야간과정 및 산업체위탁생 제외~~)할 수 있다.<개정 2015.11.07.><개정2026.05.27.>
② ~~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총 6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계절제 현장실습의 경우 160시간 이상 실습시 3학점으로 인정하고 학기제 현장실습의 경우 재학 중 1회만 허용하며, 최대 6학점까지 인정한다.<개정 2019.01.23>~~<삭제>
③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교 육 부
현 장 실
습 교 육
과 정 운
영 규 정
을 반영
함.

제34조의 6(이동수업) 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등교육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수업을 학교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.

제34조의 6(이동수업) ①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고등교육법 제22조 ~~제1항~~에 따른 수업을 학교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운영할 수 있다.

제 22조
1~3항에
관 련 된
내용임.

제55조(성희롱 예방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

제55조(성희롱 **및 성폭력** 예방)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,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

성 희 롱
및 성폭
력 등의
예방 교
육을 실

<p>조 등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22.02.04.></p>	<p>은 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라 본 대학의 구성원을 성희롱·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와 성희롱·성폭력 예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하고,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개정 2022.02.04.></p>	<p>시함.</p>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 <p>① 이 학칙은 2026년 5월 27일부터 부터 시행한다.(제5조 학과 입학정원 조정, 제29조의 2(현장실습 교육과정) 수정, 제34조의 6(이동수업) 관련 법 조항 수정, 제55조(성희롱 예방) 조문명 수정.<개정 2026.05.27.></p>	



국제예술대학교
Kukje University of Arts